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 안 번 호	36

제출연월일 : 2006년 10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오송국제하이테크 박람회 개최 및 오송단지 입주기업의 제품전시와 홍보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5년 제369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은 얻은 오송전시컨벤션 센터 신축사업의 시설확충과 건축비의 증액사유 발생과

○ 미동산수목원 부지 및 주차장으로 무상사용하는 청원군 소유의 임야와 청원군이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려는 우리 도 소유의 잡종재산으로 교환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신축 변경** ≫

○ 위 치 :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내

○ 사업규모

- 토지매입 : 1필지 33,000㎡
- 건물신축 : 1/2층 4,533㎡(철근콘크리트 스라브)

○ 사업기간 : 2005. 11 ~ 2008. 5

○ 사 업 비 : 13,400백만원(도비)

※ 주요변경내역

- 건물신축 : 지상 1층 3,300㎡ → 1/2층 4,533㎡
- 사 업 비 : 9,500백만원 → 13,400백만원

≪ 미동산수목원 주차장 부지등 교환 ≫

○ 교환대상

- 도유재산 : 청원 낭성 이목 263-14외 12필지 7,294㎡
- 군유재산 : 청원 미원 미원 산 17외 1필지 15,683㎡

○ 재산가액

- 도유재산 : 655,158천원
- 군유재산 : 655,076천원

※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한 것으로 교환시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사업기간 : 2006. 10 ~ 2007. 12

○ 사 업 비 : 비예산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재산취득	재산처분	교환취득	교환처분
계	13,400,000	-	-	-
○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신축 변경	13,400,000	-	-	-
○ 미동산수목원 주차장 부지 교환	-	-	비예산	비예산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서 : 별첨

○ 교환 취득·처분재산 목록 :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 별 첨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수 정)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5	2,035,892.0㎡ (615,857 평)	19,794,156	1	15,683.0㎡ (4,744 평)	655,076	6	2,051,575.0㎡ (620,601 평)	20,449,232
		건물	4	7,910.0㎡ (2,392 평)	9,426,900	1	1,233.0㎡ (373평)	3,900,000	5	9,143.0㎡ (2,765 평)	13,326,900
		기타									
	매입	토지	5	2,035,892.0㎡ (615,857 평)	19,794,156				5	2,035,892.0㎡ (615,857 평)	19,794,156
		건물									
		기타									
	교환	토지				1	15,683.0㎡ (4,744 평)	655,076	1	15,683.0㎡ (4,744 평)	655,076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4	7,910.0㎡ (2,392 평)	9,426,900	1	1,233.0㎡ (373평)	3,900,000	5	9,143.0㎡ (2,765 평)	13,326,900
		기타									
처분	계	토지	1	9,920.9㎡ (3,001 평)	2,189,216	1	7,294.0㎡ (2,206 평)	655,158	2	17,214.9㎡ (5,207 평)	2,844,374
		건물									
		기타									
	매각	토지	1	9,920.9㎡ (3,001 평)	2,189,216				1	9,920.9㎡ (3,001 평)	2,189,216
		건물									
		기타									
	교환	토지				1	7,294.0㎡ (2,206 평)	655,158	1	7,294.0㎡ (2,206 평)	655,158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0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 : ㎡)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천원)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계	토지	1 건	33,000.00	5,000,000				
	건물	1 건	4,533.00	8,400,000				
	기타							
1	토지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내	33,000.00	5,000,000	2005 ~ 2008	오송국제하이테크박람회 개최 및 제품전시관 등 활용	매입 (한국토지공사)	
	건물	〃	4,533.00	8,400,000	〃	〃	신축	
	기타							
2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06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7-5)

(단위 : ㎡)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천원)	교환시기	교환사유	교환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수량					
계	토지	취득		1건	15,683.00	655,076				
		처분		1건	7,294.00	655,158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1	토지	취득	임야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산 17외 1필지	15,683.00	655,076	2006	미동산수목원 부지 및 주차장	청원군수	
		처분	잡종지	청원군 낭성면 이목리 263-14외 12필지	7,294.00	655,158	〃	복지회관 등 신축	〃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토지	취득								
		처분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토지	취득								
		처분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교환 취득·처분재산 목록

(단위 : ㎡)

구 분	재 산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재산가액	교 환 사 유
취 득 (군유림)	소 계		15,683	655,076,000	
	청원 미원 미원 산 17	임 야	10,913	240,086,000	미동산주차장 활용
	청원 미원 미원 32-4	임 야	4,770	414,990,000	집단화 추진
처 분 (도유지)	소 계		7,294	655,158,000	
	청원 오창 모정 322-21	잡종지	1,283	135,998,000	게이트볼장
	청원 오창 모정 322-22	잡종지	1,442	152,640,000	집단화 추진
	청원 오창 모정 322-12	하 천	646	64,600,000	집단화 추진
	청원 낭성 이목 263-15	잡종지	251	18,825,000	복지회관 부지
	청원 낭성 이목 263-14	전	1,347	101,025,000	복지회관 부지
	청원 낭성 이목 263-21	전	331	24,825,000	복지회관 부지
	청원 낭성 이목 263-22	제 방	385	30,800,000	일단의 토지
	청원 낭성 이목 263-3	전	490	39,200,000	〃
	청원 낭성 이목 263-23	전	384	30,720,000	〃
	청원 낭성 이목 263-18	전	324	24,300,000	〃
	청원 낭성 이목 263-19	답	245	19,600,000	〃
	청원 낭성 이목 263-16	전	131	9,825,000	〃
	청원 낭성 이목 263-20	답	35	2,800,000	〃

관 계 법 령 발 췌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①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기부채납,무상양수,환지,무상귀속,교환,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양여,교환,무상귀속,건물의 멸실,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처분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